부산금융중심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활용방안

2026. 6.

본 보고서는 학술적 연구 및 공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상업적 용도로의 활용은 제한됩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특정 기업 활동, 금융 투자 또는 법률적 판단의 근거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부산금융중심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활용방안

(26.6.16. 글로벌금융중심지팀 박유정)

1 배경 및 목적

□ 연구배경

○ 부산의 지역특화형 금융실증 장치 부재

- 전국 단위 금융규제 샌드박스 체계는 존재하나 부산 지역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 건수 저조 및 지역 특화형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및 장치 부재

□ 금융규제 샌드박스

○ 현행 금융규제에 따른 제약으로 출시가 어려운 혁신 금융서비스를 일정 기간 예외적으로 시험하게 해주는 제도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근거하여 2019년 4월부터 시행
- 조건부 예외를 적용하고 감독기관의 승인과 관리 하에 실제 고객 대상 테스트가 가능하며 일정 기간 종료 후 정식 인허가 또는 중단 결정

○ 목적

- 혁신촉진 : 핀테크, 디지털금융 서비스 실험 허용
- 리스크 통제 : 완전 자유화 대신 감독 하에서 테스트
- 시장 검증 : 아이디어 수준이 아니라 실제 수요 확인
- 제도 개선 :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 개편

○ 현행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현황을 파악하고 부산금융중심지를 위해 어떻게 설계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 필요

□ 연구목적

○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현황과 부산금융중심지 활용 필요성을 살펴보고 지역사회와 결합된 부산 실증형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활용방안 제시

2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현황

□ 한국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구조

○ 현행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일정 기간 시험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와 규제를 정비하는 구조로 4가지 축(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위탁테스트, 규제신속확인)으로 구성

- 혁신금융서비스 : 규제 특례를 받아 금융서비스를 실증하는 제도
- 지정대리인 : 금융회사 업무를 핀테크회사가 대신 수행해보는 제도
- 위탁테스트 : 핀테크회사가 금융회사에게 위탁하여 금융회사를 통해 시험하는 제도
- 규제신속확인 : 규제 적용 여부를 빠르게 확인해주는 제도

○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지정되면 시범운영이 가능하고 인허가·등록·신고, 지배구조·건전성·영업행위 규제 등에 대해 특례를 인정

-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 이내이며, 1회에 한하여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 지정기간 만료 전 규제개선 요청이 이루어지고 관계 행정기관이 법령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최대 1년 6개월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

○ 다만, 소비자 보호와 위험관리 방안, 배상책임 이행보장장치 마련 의무가 함께 따르며,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또는 금융질서 안정성 저해 우려가 있으면 특례 불인정

□ 샌드박스 제도 운영방식

○ 규제 불확실성이 있는 금융서비스를 분류하고 그에 맞는 트랙으로 신청받아 심사·지정 후 제한된 범위에서 테스트하여 연장·제도화 여부를 판단하며,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혁신금융서비스임

-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 및 선정 현황(2019~2026.5)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지정	위탁테스트 선정	합계
1,072건 ***서비스출시 445건**	37건	79건	1,188건

출처 :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https://sandbox.fintech.or.kr/)

- 국내 금융혁신서비스 연도별 지정 현황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77건	58건	50건	52건	56건	207건	498건

출처 : 금융위원회, 한국핀테크지원센터

* 2024년부터 지정 건수가 증가한 원인으로는 정기신청제 도입에 따른 예측가능성 확대, 금융권 SaaS·클라우드 활용 수요 증가, 망분리 규제 개선 로드맵에 따른 규제특례 신청 집중 등에 기인

ㅇ 혁신금융서비스

- 기존 금융서비스 내용·방식·형태에서 차별성이 인정되는 서비스에 규제 특례를 부여하여 시장에서 테스트하는 방식
- 신청 정보 및 자격

구분	내용
신청자격	국내에 영업소를 둔 「상법」상 회사*또는 금융회사**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않고 비대면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외국회사"와 회사가 아닌 "개인사업자"는 「상법」상 회사로 보기 곤란 **금융회사 등: 은행/보험/금투 등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등+금융업 영위 공사, 기금+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설립된 협회+금융위원회 설립허가 비영리법인
신청시기	신청서 접수 회차별 기간(공지사항 참조)
처리기간	지정 신청양식 접수일로부터 30일 (단, 신청서 등에 대한 보완 요청 등의 사유로 최대 120일까지 기간 연장 가능)
지정지간	2년 이내(1회에 한하여 최대 2년까지 추가연장, 이후 규제개선 요청시 최대 1년 6개월까지 추가연장)

- 혁신금융서비스의 경우 기업이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 사전 컨설팅을 받고(필요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금융당국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금융위원회 의결 후 지정 여부 결정

*심사기준은 ①서비스의 지역, ②서비스의 혁신성, ③소비자의 편익, ④규제특례 적용의 불가피성, ⑤서비스 영위 자격과 능력, ⑥서비스 범위, 업무방법 및 사업계획, ⑦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 ⑧금융시장 및 금융질서 안정성, ⑨금융관련법령 목적의 달성

- 운영절차

신청	>	금융당국 심사	>	지정	>	테스트 실시	>	시장 안착 지원
지정 신청서 접수		실무단 검토후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개최		금융위원회 최종 결정(기간·대상·한도 설정)		특례적용 및 서비스 운영		법령 조속 정비 노력

- 혁신금융서비스는 '19년 이후 26년 5월 기준으로 1,072건의 서비스가 지정되었으며 정기공고에 따라 계속 운영중

○ 지정대리인

- 핀테크 기업과 같은 지정대리인이 금융회사의 본질적업무를 수탁하고 금융회사와 협력하여 금융서비스를 시범·운영하는 제도로 업무 위탁을 통해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직접 운영 가능

출처 :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https://sandbox.fintech.or.kr/)

- 신청전 제도 적합성 및 업무 위수탁 범위의 적절성을 먼저 보고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컨설팅을 거쳐 정식 신청서를 제출하며 서비스를 스스로 실증하는 방식보다는 금융회사와의 역할 분담 구조를 먼저 설계

- 신청 정보 및 자격

구분	내용
신청자격	국내에 영업소를 둔 「상법」상 회사또는 금융회사
신청시기	회차별 공고
지정기간	2년 이내

- 운영절차

신청		심사		지정		계약체결 및 보고		테스트 실시
정식 신청서 접수	>	실무단 검토후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개최	>	금융위원회 최종 결정	>	업무 위수탁 계약 체결	>	시범 운영 실시

- 2018년 5월부터 시행되었으며 26년 5월 기준 누적 37건 지정

○ 위탁테스트

-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금융서비스를 금융회사에게 위탁하여 금융회사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시범 운용하는 제도로, 미인가 기업, 독자적 테스트가 어려운 소규모 기업, 금융회사와 협업을 희망하는 기업의 테스트 기회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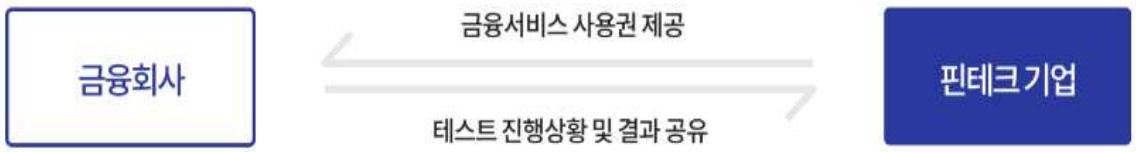

출처 :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https://sandbox.fintech.or.kr/)

-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신청을 받고 한국핀테크지원센터·한국핀테크산업협회·금융회사 등으로 구성된 민간협의체가 정기적으로 테스트 적합성 평가
-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개별 협의를 통해 테스트 조건을 정하고 실제 테스트를 진행하며 감독당국의 직접 지정보다 민간협의체 평가와 금융회사 매칭의 성격
- 신청 정보 및 자격

구분	내용
신청자격	국내에 영업소를 둔 「상법」상 회사
신청시기	상시
처리기간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간 개별 협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는 기간)
수행방식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의 매칭을 통한 시범 서비스 운영

- 운영절차

참여 신청	>	민간협의체 개최	>	금융회사 매칭	>	테스트 실시
신청서 접수		IR 피칭을 통한 서비스 PR		금융회사-핀테크기업 계약 체결		양사간 위탁 테스트 실시

- 2017년 10월부터 시행되었으며 26년 5월 기준 누적 79건 지정

○ 규제신속확인

- 새로운 서비스가 기존 법령상 가능한지, 금지되는지 불확실할 때 법적 판단을 받는 절차로 금융위 소관 법령뿐 아니라 타 부처 소관 법령까지 처리가능한 원스톱 서비스

- 신청 정보 및 자격

구분	내용
신청자격	국내에 영업소를 둔 「상법」상 회사또는 금융회사
신청시기	상시
지정기간	법령 등의 적용여부 확인 - 법령,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행정규칙, 그 밖에 행정기관에 권한을 부여한 모든 규정을 말함
확인기간	30일 이내 - 단, 신청서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 - 타 행정기관 소관사항 존재 시, 최장 30일 추가

- 운영절차

출처 :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https://sandbox.fintech.or.kr/)

3 금융규제 샌드박스 주요 성과 및 한계

□ 한국의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26. 5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 1,072건이 지정되었고, 이 중 445건이 시장에 출시되었으며, 실질적으로 제도화된 사례는 25년 3월 기준 145건임 (출처 : 한국핀테크지원센터)

□ 샌드박스 제도 도입 이후 대출비교 플랫폼, 예금중개, 소수단위 주식거래, 소액 후불결제,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유통플랫폼 등 사례별 규제개선·법령개정·인가단위 신설·등록 등의 성과

가 한국 금융규제 샌드박스 주요 성과 사례

□ 대출상품 비교·추천 플랫폼

○ 대출비교 플랫폼은 원래 대출모집인의 1사 전속주의 때문에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을 한 플랫폼에서 비교·추천하기 어려웠으나 샌드박스를 통해 이 규제를 예외적으로 풀어줌

○ 핀다,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플랫폼이 다수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을 비교·추천 가능하도록 함

- 이후 대출비교 플랫폼은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와 결합되면서 단순 비교 서비스를 넘어 실제 대출 갈아타기 시장의 핵심 채널
- 2021년 온라인 대출모집법인 등록 제도를 신설하고 1사 전속주의 예외 마련

○ 금융위원회도 대출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을 금융규제 샌드박스 주요 성과 사례로 평가

□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 조각투자는 부동산, 음원저작권, 미술품 등 기초자산을 신탁수익증권 또는 투자계약증권 구조로 쪼개 투자하는 모델

○ 금융위는 조각투자 유통플랫폼도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과 유사하게 별도 투자중개업 인가단위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제도화를 추진

○ 2025년 기준 조각투자 관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사업자는 6개, 이 중 4개 사업자가 서비스를 운영 중이었고, 금융위는 유통플랫폼 인가단위 신설을 통해 투자자의 환금성과 시장 신뢰를 높이겠다는 방향 제시

□ 온라인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 예금상품은 과거에는 중개서비스가 제도적으로 명확하지 않았고, 오프라인 중개 시 금전 편취 위험 등이 있어 대출·보험과 달리 판매중개가 제한적으로 취급

○ 금융위는 2022년 11월 9개 기업의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고, 2023년 6월부터 순차 출시를 추진

○ 이후 금융위는 2025년 4월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의 제도화 방안을 발표

- 네이버페이, 신한은행, 카카오페이, 토스가 운영 플랫폼으로 참여했고, 2023년 6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총 6.5만 건의 예·적금 상품 가입을 중개

참고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제도화 방안 (2025.4)**

1. 기본방향

□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 중인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제도화** → 금소법상 **예금성 상품 판매중개업**으로 **정식 도입**

□ **예금·대출**의 **대면 비교·추천**은 **은행대리업자**의 ❶ **중개**(직접/중개업) 및 ❷ 다른 **중개제도**(플랫폼, 모집인) **활용**(간접/자문업)을 통해 **제공**

2. 서비스 제도화 방안

□ (개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예금성 상품 판매중개업**을 **도입**하여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제도화**

○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는 비대면(온라인) 방식의 예금성 상품 판매중개업(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도입

□ **등록요건**

---

❶ (인적요건) 전문인력 및 전산설비 운용인력 1인 이상 보유, 대표자·임원은 각 여신금융협회가 지정한 기관의 교육 이수,

* ①대출성 상품 직접판매업 3년 이상 종사 경력 보유+ 각 업권별 협회 지정기관의 교육을 24시간 이상 이수한 자, ②경력 미보유 + 교육 48시간 이상 이수한 자 각 1인 이상

❷ (물적요건) 고정사업장과 정보통신설비, 사무장비 및 통신수단, 업무 자료의 보관 및 손실방지설비, 전산설비 등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 등을 갖출 것

❸ (기타요건) 사회적 신용 요건 충족, 5천만원 이상 보증금 예탁 또는 보장성 상품에 가입,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금융상품 비교·추천 알고리즘 설치 및 코스콤에 의한 알고리즘 검증 결과 제출 등

*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상 벌금형 이상, 채무불이행 등에 해당 없을 것

** 소비자에게 유리한 순서와 무관하게, 특정 금융회사 상품을 우선 추천하는 행위 등

나 한국 금융규제 샌드박스 한계

□ 임시특례 중심으로 특례 이후 본사업으로의 연결성 약화

○ 테스트 단계의 규제 특례는 주지만 본 사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개별 법령 개정 또는 별도 인가 절차가 필요

○ 기업은 기술 검증보다 법령 정비 및 인가 전환에 따르는 리스크를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리스크에 따르는 요구 자원이 높은 수준

□ 심사·운영 단계에서의 비효율성 존재

○ 샌드박스 심사기준에는 혁신성, 소비자 편익, 특례 필요성, 소비자보호, 금융시장 안정성 등 요소가 포함되는데 이는 정량 기준만으로 판단되기 어려우며 기업에게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비용으로 전가

○ 금융위원회는 2024년 신청 절차를 편리하고 투명하게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으며 별도 컨설팅 및 분야별 소위원회 운영을 도입하여 운영체계 점진적으로 정비 중

□ 소비자 보호 장치에 대한 한계

○ 금융상품은 피해발행시 회복이 어렵고 실패가 곧 소비자 손실로 이어져 사전적 위험 관리의 중요성이 큼

○ 혁신금융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보험 가입 의무를 두고 심사 단계에 소비자보호 및 위험관리방안 등을 평가하는 제도가 있으나 정보비대칭, 불완전판매, 알고리즘 오류, 시스템 장애 같은 위험 제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 기존 금융회사 중심의 구조

○ 현 샌드박스 제도는 금융산업의 진입장벽 완화보다 기존 금융회사 중심의 질서 안에서 제한적으로 실험시키는 성격이 강함

○ 지정대리인 제도는 핀테크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핵심업무를 위탁 받아 시험하는 방식으로 혁신기업의 자율적 진입보다 기존 금융회사의 통제된 실험장에 가까운 경향

4 해외 사례

가 싱가포르

□ 싱가포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특징

○ 싱가포르 금융당국(MAS)은 2016년 국제금융허브로서 도약을 위해 FinTech Regulatory Sandbox을 도입

- 내수 생활 보다 해외결제·송금·디지털자산·AI 거버넌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샌드박스를 단독제도가 아닌 Sandbox Express·Plus·산업 프로젝트와 연결된 플랫폼으로 운영

○ 운영방식

- 기본 샌드박스 : 회사가 특정 서비스를 시험하고 싶다고 신청하면 MAS가 검토후 조건(시험기간, 고객 수, 거래 한도, 위험 공시, 소비자 피해시 보상 등)을 제시하여 진행하는 조건부 시험 허용
- Sandbox Express : 2019년 도입했으며 일반 샌드박스보다 비교적 표준화된 빠른 심사를 위한 faster option
- Sandbox Plus : 2021년 발표하였으며 규제 특례뿐 아니라 시장 진입 지원을 추가

○ 싱가포르의 금융 샌드박스 제도는 금융허브 전략과 연결하여 새로운 금융기술을 남보다 빨리, 그러나 통제된 조건에서 시험하기 위해 만들어짐

- 싱가포르 샌드박스 주요 특징

요인	내용
새로운 서비스의 시험 허용	기존 법에 안 맞는다고 바로 금지하지 않고,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면 작은 범위에서 먼저 시험
자유화가 아닌 조건부 허용	샌드박스에 대해, 실패의 결과가 전체 금융시스템으로 번지지 않도록 appropriate safeguards(시험기간, 소비자보호조치 등)
제한적 범위 내 실증 운영방식	감독당국이 신규 서비스의 허용 범위와 조건을 사전에 설계한 후 제한된 환경에서 실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용화 또는 제도 보완 여부를 결정하는 운영방식
제도화·상용화로 연결	실험 후 더 빠른 시장 진입, 정식 인허가, 제도 정비와 연결
국제금융허브 경쟁력 강화와 연계	샌드박스를 단순 혁신 지원수단이 아닌, 국제금융·결제·자산이동·디지털금융 등 금융허브 핵심 기능을 선제적으로 실증·고도화하기 위한 정책 실행도구로 활용

○ 싱가포르 MAS는 2016년 이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총 19개 기업을 수용하였으며, 이 중 15개 기업이 샌드박스를 졸업하고 관련 라이선스를 취득하여 정식 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전환

□ 샌드박스 정식 제도화·인가·시장 출시 사례

○ iSTOX/ADDX는 싱가포르 MAS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증된 디지털 증권 발행·거래 플랫폼

- 기존에는 기관투자자나 고액자산가 중심으로 접근 가능했던 사모펀드, 채권, 구조화상품 등 자본시장 상품을 디지털 증권 형태로 발행·유통
-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기술(DLT)을 활용하여 증권의 발행, 소유권 기록, 보관, 거래 절차를 디지털화

○ iSTOX/ADDX는 샌드박스 제도에서 디지털 증권을 기존 자본시장 규제체계 안에서 발행·거래할 수 있는지 실증

- 주요 실증 대상은 디지털 증권 발행, 투자자 등록, 적격투자자 확인, 소유권 기록, 보관, 2차 거래, 거래 후 정산 등
- 특히 투자자 보호, 자금세탁방지, 시장운영 리스크, 보관·수탁 안정성 등 자본시장 인프라 운영에 필요한 규제 요건을 검증

○ iSTOX는 2019년 MAS FinTech Regulatory Sandbox에 참여한 후 2020년 2월 샌드박스를 졸업하였으며 이후 MAS로부터 Recognised Market Operator(RMO) 및 Capital Markets Services(CMS) licence를 취득

○ 이를 통해 단순한 파일럿 서비스가 아니라, 정식 인가를 받은 디지털 자본시장 플랫폼으로 전환하였으며 이후 iSTOX에서 ADDX로 리브랜딩하여 사모펀드, 채권, 대체투자상품 등 디지털 증권 플랫폼 사업을 지속 운영

○ iSTOX/ADDX 사례는 샌드박스가 단순 규제유예를 넘어, 혁신 금융서비스의 정식 금융시장 인프라 편입 가능성을 검증한 사례

○ 디지털자산을 무규제 영역이 아닌 기존 자본시장 규제체계 내 발행·유통·보관 구조로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규제 강도가 높은 자본시장 분야에서 샌드박스 실증이 정식 라이선스 취득과 사업화로 이어진 대표 사례로 평가 가능

나 인도

□ 인도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특징

○ 인도는 중앙은행(RBI) 중심으로 증권당국(SEBI), 보험당국(IRDAI)에서 금융업권별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

- RBI(Reserve Bank of India)은 은행·결제·대출 중심, SEBI(Securities and Exchange Board of India)은 자본시장·투자상품 중심, IRDAI(Insurance Regulatory and Development Authority of India)은 보험 분야 중심으로 업권별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고, 실증을 승인·평가
- 인도 RBI의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기본적으로 테마별 코호트 방식으로 운영

구분	분야	주요 내용
1차 코호트	Retail Payments	일반 소비자와 가맹점 간 결제서비스 실증. 오프라인 결제, 디지털 소액결제 등 포함
2차 코호트	Cross Border Payments	해외송금, 국가 간 결제, 국제 지급결제 효율화 관련 서비스 실증
3차 코호트	MSME Lending	중소·영세기업 대상 대출, 신용평가, 디지털 대출 관련 서비스 실증
4차 코호트	Prevention and Mitigation of Financial Frauds	디지털 결제·대출 등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기 탐지·예방·완화 기술 실증
5차 코호트	Theme Neutral	특정 분야를 미리 정하지 않고, 혁신성이 있는 금융서비스를 폭넓게 접수·실증

○ 인도의 경우 전국 단일 샌드박스 모델이 아니라, RBI・SEBI 등 업권별 샌드박스를 운영하고, GIFT City라는 국제금융 특구 안에 특화 샌드박스를 둔 구조

- 2022년 국제무역금융 플랫폼 4곳(RXIL Global IFSC, Vayana IFSC, Mynd IFSC, Kredx Ventures IFSC)이 규제 샌드박스 아래 운영을 시작
- 4곳의 플랫폼은 수출입 기업이 무역금융이 필요할때 여러 금융회사나 자금공급자와 디지털로 연결해 주는 장터 역할
- 제공 기능에는 import factoring, export factoring, reverse factoring, forfaiting 등 포함
- 새로운 무역금융 서비스, 해외송금, 디지털금융, KYC/데이터기술 등을 GIFT City에서 시험하고 사업으로 키우는 구조

○ 인도의 경우 국제금융거래를 국내로 끌어오기 위해 만든 금융 특구인 GIFT City는 통해 그 안에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먼저 시험하고 사업화

□ 샌드박스 정식 제도화・인가・시장 출시 사례 (HDFC Bank・Crunchfish/ OfflinePay)

○ OfflinePay는 HDFC Bank와 스웨덴 핀테크 기업 Crunchfish가 인도 중앙은행(RBI) 금융규제 샌드박스에서 실증한 오프라인 디지털 결제 서비스

- 인터넷 연결이 없거나 통신망이 불안정한 지역에서도 고객과 가맹점이 디지털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지원
- 인도의 농촌지역, 저통신망 지역, 항공기 내, 지하・혼잡지역 등 네트워크 제약이 있는 환경에서 디지털 결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

○ HDFC Bank는 2023년 2월 OfflinePay 파일럿을 출시했으며, 해당 파일럿은 16개 도시에서 약 4개월간 운영

- RBI의 Regulatory Sandbox 중 Retail Payments 분야에서 실증 진행
- 고객과 가맹점이 네트워크 없이 거래를 수행하고, 이후 고객 또는 가맹점이 온라인에 접속하면 거래가 정산되는 방식

○ RBI는 2023년 12월 Offline Retail Payments 제품이 샌드박스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발표하였으며 이후 해당 솔루션은 관련 규제 요건을 충족하는 은행 등 규제대상 금융기관이 도입을 검토할 수 있는 단계로 전환

○ 이는 샌드박스가 단순 기술실증이 아니라 RBI 평가를 거쳐 금융기관이 활용 가능한 오프라인 결제 솔루션으로 인정받은 사례이며 금융포용형 결제 서비스를 실제 금융인프라로 확산시키는 경로로 기능한 사례

○ 다만 자본시장 라이선스를 받아 독립 금융시장 인프라로 전환된 사례라기보다는 기존 은행·결제기관이 채택 가능한 결제 기술 솔루션으로 사업화된 사례

다 바레인

□ 바레인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특징

○ 바레인은 2017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였으며 Central Bank of Bahrain (CBB, 바레인 중앙은행)이 직접 운영하는 중앙은행 주도형으로, 핀테크 기업과 기존 금융회사가 제한된 기간과 범위 내 혁신금융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설계

- CBB 내 FinTech & Innovation Unit이 신청 승인, 실증기업 감독, 테스트 진행상황 점검, 핀테크 규제·기술 동향 모니터링을 담당
- 은행·결제·핀테크·자본시장·암호자산 분야를 중앙은행 중심으로 관리하는 구조

○ 핀테크 허브 육성 전략과 연계

- 바레인의 샌드박스는 단순 규제유예 장치보다는 국가 차원의 핀테크·금융서비스 허브 전략과 결합
- 샌드박스를 통해 현지·역내·해외 스타트업을 유치하고, 바레인을 GCC(Gulf Cooperation Council) 금융혁신 거점으로 포지셔닝하려는 목적이 강함

- CBB는 샌드박스 외에도 크라우드펀딩 규제, 오픈뱅킹, 디지털 혁신 플랫폼 등과 연계해 핀테크 생태계를 조성

ㅇ 테스트 기간과 통제 장치를 둔 제한적 실증 구조

- 무제한 규제완화 보다는 제한된 기간과 범위 내 혁신서비스를 테스트하는 구조로 신청기업은 적격성, 실증계획, 소비자 보호, 위험관리, 규제준수 방안 등을 제출해야 하며 “규제 면제” 라기보다는 통제된 환경에서의 제한적 규제완화 성격

ㅇ 디지털 샌드박스 플랫폼과 연계

- 바레인은 오프라인 심사형 샌드박스에 그치지 않고, FinHub 973이라는 디지털 혁신 플랫폼도 운영
- FinHub 973은 은행과 핀테크 기업이 만나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실제처럼 시험해보고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온라인 실험 플랫폼
- 이는 규제기관이 단순 승인자가 아니라, 금융기관과 스타트업 간 협업을 촉진하는 조정자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ㅇ 프레임워크 고도화

- CBB는 2021년 12월 샌드박스 프레임워크를 개선하여 적격성 기준을 강화하고, 스타트업·핀테크 기업 간 협력 및 테스트 절차를 보다 구조화한 것으로 설명
- 이는 초기 개방형 실험 단계에서 더욱 체계적인 실증·감독·사업화 관리 단계로 전환한 것

ㅇ 바레인 샌드박스의 특징은 단순한 규제유예보다 핀테크 허브 육성, 오픈뱅킹·암호자산 제도화, 정식 라이선스 전환과의 연계성이 강하다는 점

□ 샌드박스 정식 제도화·인가·시장 출시 사례

ㅇ Tarabut Gateway는 바레인 핀테크 기업으로 2018년 초 바레인 중앙은행(CBB)의 Regulatory Sandbox에 참여하여 오픈뱅킹 솔루션을 실증

- 여러 은행 계좌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조회하고, 은행·핀테크·가맹점 간 금융데이터 연계를 지원하는 서비스 실증
- 바레인이 GCC·MENA 지역 핀테크 허브로 자리잡기 위해 추진한 오픈뱅킹 정책과 직접 연계

○ Tarabut Gateway는 CBB 샌드박스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첫 번째 기업으로 발표되었으며 이후 CBB의 규제 아래 Account Information Service Provider(AISP) 및 Payment Initiation Service Provider(PISP)로 운영

○ 현재 Tarabut Gateway는 바레인에서 CBB 규제를 받는 AISP/PISP 사업자로 소개되고 있으며, MENA 지역 오픈뱅킹 플랫폼으로 확장

○ 이 사례는 샌드박스가 단순한 규제 유예가 아니라, 오픈뱅킹 서비스를 정식 금융서비스로 편입시키는 검증 절차로 기능한 사례

- 오픈뱅킹 분야에서는 규제 샌드박스가 개별 서비스 실증을 넘어, 은행권 API 개방과 데이터 기반 금융서비스 확산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활용

○ 바레인은 샌드박스와 오픈뱅킹 규제를 병행하여, 핀테크 기업이 은행권 데이터 인프라와 연결될 수 있는 제도적 경로를 마련

-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Tarabut Gateway의 오픈뱅킹 서비스를 제한된 범위에서 실증하는 한편, 은행의 API 개방과 제3자 사업자의 계좌정보·결제개시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는 오픈뱅킹 규제를 병행하여 마련
- 즉, 샌드박스가 개별 서비스 테스트에 머무르지 않고, 오픈뱅킹 제도화와 결합되어 금융데이터 인프라 개방 및 핀테크 사업화로 이어진 사례

○ Tarabut Gateway는 샌드박스 졸업 이후 실제 라이선스 기반 사업자로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바레인의 대표적인 사업화 사례로 평가

요약 **해외 샌드박스 정식 제도화 · 인가 · 시장 출시 사례**

구분	싱가포르	인도	바레인
기업	iSTOX/ADDX	HDFC Bank·Crunchfish	Tarabut Gateway
실증 내용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증권 발행·보관·거래 플랫폼	인터넷이 없거나 불안정한 환경에서도 디지털 결제를 수행하는 오프라인 소액결제 솔루션 실증(OfflinePay)	오픈뱅킹 기반 계좌정보 통합·은행 연결 서비스
사업화 과정	2020년 MAS 샌드박스 적용 → Recognised Market Operator(RMO) Capital Markets Services(CMS) licence 취득 → ADDX로 리브랜딩하여 디지털증권 플랫폼 운영	2023년 RBI 샌드박스 성공 종료 후, 요건을 충족한 규제대상 금융기관이 도입을 검토할 수 있는 결제 솔루션으로 전환	2018년 CBB 샌드박스 최초 성공 이후 바레인 오픈뱅킹 생태계의 핵심 사업자로 성장
시사점	정식 자본시장 인프라 인가로 이어진 사례	샌드박스가 금융포용형 결제 인프라의 실제 사업화 경로로 기능	국가 오픈뱅킹 제도화와 민간플랫폼 사업화로 연결

5 부산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활용 필요성

□ 부산금융중심지 조성 관점의 필요성

○ 부산은 BIFC 3단계 준공으로 디지털 금융밸리 조성, 금융특구 제도 도입 등 금융 육성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단순 기관유치나 공간 조성으로는 부산금융중심지 경쟁력 확보에 제약

○ 부산으로 금융혁신 기업과 서비스를 끌어오기 위해서는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시험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로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활용 필요

□ 부산의 특화 산업 관점의 필요성

○ 부산금융중심지는 해운·항만·물류 연계 금융, 디지털자산, AI·데이터 기반 금융서비스처럼 지역산업이 있다는 점에서 타 도시와 차별성

- 서울과 같은 범용 금융 경쟁으로 우위 확보가 어려워 지역의 실물 산업과 결합된 특화 금융 분야에서 차별화하는 전략이 필요

○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기존 규제로 시장에 나오기 어려운 서비스를 시험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동남권 지역의 지역산업 수요를 금융서비스로 전환하는데 적합

- 해운·물류·항만·수출입 등 지역 주력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조달, 결제, 외환, 투자, 위험관리 기능을 구체적인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로 구현

○ 해운·항만·물류 연계 금융, 디지털자산, AI·데이터 기반 금융서비스 등 지역 산업과 결합된 특화 분야 중심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주력산업의 수요를 구체적인 금융서비스로 전환이 필요

6 부산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 현황

□ 부산의 금융규제샌드박스 지정 현황

○ 혁신금융서비스 기준으로 전국 1,057건 중 기업동의를 받은 공시사례는 754건이며 이 중 부산(소재지 주소 기준)은 21건으로 전국대비 미비한 실정

- 부산의 경우 BNK금융지주 계열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등 금융공공기관·지역금융사 중심의 사례군 존재

□ 부산 금융규제샌드박스 지정 주요 사례

○ (부산은행) 은행 내점 고객 대상 디지털 실명확인 서비스

- 고객이 신분증 원본을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QR 촬영, 앱 로그인, 기존 제출 신분증 스캔 이미지 대조 등을 통해 실명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한 사례
- (특례내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여 고객이 신분증 원본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동 서비스를 통해 실명확인이 가능하도록 특례 부여

○ (한국예탁결제원)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 신탁제도를 활용하여 온주를 여러 개의 수익증권으로 분할발행하는 방식으로 국내 상장주식을 소수단위(최대 소수점 아래 여섯째자리)로 거래할 수 있도록 각 증권사와 투자자를 지원

- 이를 통해 고가의 국내 주식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접근성이 확대되고, 소액으로도 분산투자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
- (특례내용①) 예탁결제원이 신탁업 인가를 받지 않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신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
- (특례내용②)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시 발행되는 수익증권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수익증권에 대해서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의무를 적용받지 않도록 특례

○ (BNK캐피탈) 내부 임직원 대상 M365 및 Copilot 활용 업무협업 서비스

- 내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Microsoft사가 제공하는 SaaS(M365 및 Copilot)를 활용한 업무협업 서비스 제공(문서작성 및 편집자동화, 데이터분석 및 보고서작성 등)
- (특례내용)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3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방지하기 위해 대책을 수립, 운용하여야 하고,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은 인터넷(무선통신망 포함)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 차단 및 접속이 금지되나 내부업무용 단말에서 외부통신망을 통한 클라우드(SaaS)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 부여

○ (부산동백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모바일 지역상품권 플랫폼 서비스

- KT와 부산시가 제휴하여 부산동백전(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부산시가 자금을 보관·운용하여, 이를 부산시 내의 가맹점에서 지급수단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서비스
- (특례내용) 전자금융법령상 ①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자는 선불충전금 관리를 위탁할 수 없고, ②가맹점이 1개 기초자치단체 안에만 위치할 경우 전자금융업 등록 없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가능하나 ①KT가 아닌 부산시가 선불충전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②가맹점이 부산시(광역자치단체)에만 위치하는 경우에도 전자금융업 등록 없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를 할 수 있도록 특례

○ (아이쿠카) 미래세대 금융교육을 위한 맞춤형 예적금 계좌 추천 서비스

- 자녀가 아이쿠카의 '해냄통장'에서 설정한 저축 목표와 연동하여, 시중은행의 미성년자 전용 예적금 상품 중 가장 유리한 조건의 상품을 AI로 비교·추천하고 부모의 동의 하에 비대면 계좌 개설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서비스
- (특례내용)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1조 및 제12조: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등록 규제 특례, 금융소비자보호법 감독규정 제22조: 1사 전속의무 규제 특례

□ 부산의 금융규제샌드박스 지정 제한 원인

ㅇ 금융산업구조 자체의 수도권 집중

- 혁신금융서비스는 대부분 금융회사 또는 핀테크 기업이 신청하는 주체이며 이러한 신청 주체들은 대부분 서울 및 판교에 집중하여 샌드박스 신청군 자체가 적음
- 또한 샌드박스의 성격은 소비자 중심의 규제 실험형 서비스로 혁신금융서비스의 다수는 간편결제, 마이데이터, 신용평가, 플랫폼 금융, 보험·대출비교 서비스 등 B2C 서비스 중심이며 이는 플랫폼 기업·데이터 기업이 있는 수도권에서 발생
- 반면 부산은 정책금융, 해양금융, 인프라금융이 중심이되어 샌드박스 대상이 되는 규제 실험형 서비스 적음
- 본사와 투자기능의 수도권 집중, 부산 디지털 산업의 소기업·초급 인력 중심 구조, 후속투자 및 수요처 부족 등의 요인으로 부산 기업의 샌드박스 지정에 제한

ㅇ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부산 금융산업 구조 간 미스매치

- 샌드박스의 특성상 스타트업이 가정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제도이며 부산의 스타트업 생태계 기반은 커지고 있으나 약한 실정
- 또한 부산의 주요 금융기관은 주로 정책금융 기관으로 규제 실험보다는 안정성·공공성 중심이며 리스크 있는 서비스 출시 유인이 낮아 샌드박스 활용 빈도가 구조적으로 낮음
- 현행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소비자 중심 디지털 금융서비스 실증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해양금융·정책금융·시장인프라 중심의 부산 금융산업 구조와 정합성이 낮음

ㅇ 제도 접근성의 비대칭

- 금융위, 금감원, 금융협회 등 주요 규제기관은 서울에 위치해 있어 샌드박스 실무 대응(컨설팅, 규제협의, 법률검토)은 수도권 기업이 유리
- 정부 역시 지역 격차를 인정하여 24년 금융당국이 별도로 직접 지역으로 내려가서 샌드박스 신청·컨설팅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운영

참고 부산 혁신금융샌드박스 지정 사례

구분	기업명	서비스명
1	BNK 부산은행	은행 내점 고객 대상 디지털 실명확인 서비스
2	부산은행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실명확인 서비스
3	BNK부산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시스템 내 예금 토큰 기반 지급·이체 서비스
4	한국예탁결제원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지원 서비스
5	한국예탁결제원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6	한국예탁결제원	MS OpenAI기반 내부임직원 맞춤형 업무정보 제공하는 AI 이용 포털 구축
7	한국거래소	KRX 신종증권(투자계약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 시장 개설
8	한국거래소	KRX 공모펀드 상장클래스증권시장 개설
9	하이투자증권	소액으로 매매하는 해외 소수점 거래 서비스
10	BNK캐피탈	직원 협업을 위한 클라우드(SaaS) 소프트웨어 M365 내부망 이용 서비스
11	BNK캐피탈	내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Microsoft사가 제공하는 SaaS(M365 및 Copilot)를 활용한 업무협업 서비스 제공
12	BNK캐피탈	Microsoft사가 제공하는 SaaS를 활용한 협업 서비스 (Graph, Exchange Online)
13	BNK금융지주	클라우드를 활용한 협업툴 소프트웨어 서비스 (M365)의 내부망 이용
14	BNK투자증권	클라우드(SaaS) 기반 M365 및 코파일럿(Copilot) 서비스의 내부망 이용
15	BNK투자증권	클라우드(SaaS) 기반 M365 및 코파일럿(Copilot) 서비스의 내부망 사용을 위한 필수 보안 솔루션 이용
16	BNK투자증권	클라우드(SaaS) 기반 M365 및 코파일럿(Copilot) 서비스의 내부망 사용을 위한 데이터 분석/자동화 솔루션 이용
17	비엔케이저축은행	저축은행이 투자자로 참여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개인신용대출 서비스
18	DH저축은행	
19	고려저축은행	
20	동원제일저축은행	
21	아이쿠카	미래세대 금융교육을 위한 맞춤형 예적금 계좌 추천 서비스

출처 :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https://sandbox.fintech.or.kr/)

7 부산 실증형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위한 제언

□ **금융회사, 벤처투자, 전문인력, 본사 기능은 여전히 서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이 서울과 같은 일반 핀테크 경쟁에서는 한계가 있으므로 부산의 산업 기반에서 비교우위가 있는 영역을 특화해야함**

○ 국내 핀테크 기업은 서울에 75%가 집중되어있고 서울핀테크랩의 누적 매출·투자유치 규모도 부산 핀테크 허브보다 큰 수준

- 서울핀테크랩 입주기업의 누적 매출 6,504억 원, 누적 투자유치 4,583억 원('24년 말 기준)이며 부산 핀테크 허브 누적 매출액 2,245억 원, 투융자 규모 712억 원(' 24년 성과공유회 기준)
- 서울핀테크랩은 부산 핀테크 허브보다 누적 매출은 약 2.9배, 투자유치·투융자 규모는 약 6.4배 큼

□ **부산의 산업구조는 개인금융과 관련된 핀테크보다 '해운·항만물류·수산·조선기자재·디지털자산·탄소금융' 처럼 기존 금융규제가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실물자산 기반의 금융실증 수요가 큼**

○ 부산은 2023년 기준 해양관련 분야 사업체 29,922개, 종사자 162,445명, 매출액 56.8조 원 규모로, 부산 전체 산업에서 사업체 수 7.5%, 종사자 수 10.4%, 매출액 14.4%를 차지해 지역 경제에서 해양·항만물류 비중이 큼

○ 이들 산업에서 생산되는 정보를 금융데이터화 한다면 기업 등 수요자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고 금융사 측면에서는 혁신금융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실질적인 금융생태계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부산의 산업구조를 반영하여 금융실증 수요는 단순 소비자 핀테크보다 항만물류, 수산, 조선기자재, 해양금융, 디지털자산, 탄소금융 분야의 선박·화물·운송계약·재고·매출채권·탄소배출권 등 실물자산 기반 금융모델을 적극 검토할 필요

□ **부산의 산업구조에 부합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활용을 확대하여 지역 금융중심지 전략을 구체적인 실증사업과 사업화 성과로 연결**

○ 부산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할 수 있는 산업 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활용 방식이 산업과 분리되어있음

- 부산은 해운·항만·물류 중심 수출입 기반의 무역 경제 구조이며 해양금융 수요가 집중되어 있으나 현재 샌드박스 제도의 특징은 간편결제, 인증, 개인금융 중심의 수도권 핀테크 서비스 위주임

○ 부산 산업과 직접 연결된 금융서비스 실증이 부족하고 부산의 샌드박스 지정 역시 금융 혁신보다는 소비자 편의 서비스 수준에 머무는 실정

- 부산의 핵심 산업인 해양·항만·물류와 직접 결합된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 사례는 공개된 대표 사례에서 찾을수 없었음
- 부산의 지정 사례는 주로 정책 공공기관 위주의 소비자 편의 서비스 중심

○ 부산 주력 산업의 샌드박스 활용 방안 발굴이 필요

- 해운·물류 등 부산 주력 산업의 실제 거래를 금융서비스로 전환하여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를 샌드박스로 해결
- 예를들어 선박 운항, 화물 운송, 컨테이너 임대, 벙커링, 운임 청구, 수출입 대금 결제 등 실거래시 채권, 소유권, 사용권, 결제정보, 물류데이터를 금융서비스로 연결하는 방안
- 해운·물류는 금융 리스크가 큰 분야로 실거래를 금융서비스로 전환시 자본시장법, 전자금융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전자문서법, 상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복수 규제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어 일반 제도 하에서는 즉시 사업화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
- 부산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여 해운·물류 산업의 실제 거래를 제한된 범위에서 금융서비스로 전환하고, 실증 과정에서 규제 충돌, 소비자 보호, 데이터 신뢰성, 사업성 등을 검증
- 단순한 해양분야의 핀테크 서비스 도입이 아니라 부산의 해운·물류 산업 기반을 금융혁신 실증 자산으로 전환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

□ **부산 금융규제 샌드박스 활용 확대를 위해 ① 부산 전용 샌드박스 협의체 개설, ② 샌드박스 종료 후 안착 패키지 도입 ③ 지역 금융중심지 전략과 연계된 실증 플랫폼으로 샌드박스 제도를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

참고 **물류 거래데이터를 활용한 여신심사 보조모형을 위한 샌드박스 제도 활용 방안**

1. 필요성 및 목적

□ 부산은 항만물류, 포워딩, 수출입 물류, 해운 관련 기업이 집적되어 있으나 이들 기업은 실제 거래와 매출이 꾸준히 발생하더라도, 기존 재무제표 중심의 대출심사에서는 이러한 영업상황이 충분히 평가되지 못하는 경우 다수

□ 이에 따라 부산시와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이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부산 소재 금융회사, 보증기관, 한국해양진흥공사, 항만물류기업, 핀테크·데이터 분석기업 등이 참여하는 방식의 실증체계를 구축을 위해 샌드박스 제도 활용

○ 필요한 데이터 결합·관련 금융데이터의 제3자 제공·금융회사 심사업무 등의 적용을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규제 특례 신청

구분	신청 내용
데이터 결합	참여기업 동의를 받아 해양물류 거래데이터, 세금계산서, 매출채권 회수 정보, 운임지수 등을 결합·분석할 수 있는지 확인
제3자 제공	핀테크·데이터 분석기업이 산출한 여신심사 보조지표를 금융회사·보증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신청
금융회사 업무위탁	금융회사가 외부 핀테크 기업에 여신심사 보조모형 개발·운영·검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신청
심사업무 적용	금융회사·보증기관이 해당 보조지표를 운전자금 대출, 매출채권 금융, 공급망 금융, 보증심사의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
규제특례 요청	신용정보업 인허가,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금융회사 업무위탁, 데이터 결합·제공 관련 제한에 대해 실증 범위 내 특례 요청

2. 물류 거래데이터 기반 여신심사 보조모형

□ 선박 입출항 정보, 선적·운송계약, 운송장,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채권 회수정보 등 참여기업 동의 기반의 거래데이터를 연계·분석하여 항만물류·포워딩·수출입 기업의 거래 실재성, 현금흐름 안정성, 거래처 분산도, 업황 민감도 등 평가

○ 은행이나 보증기관의 기존 여신심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금 대출, 매출채권 금융, 공급망 금융, 보증심사 과정에서 보조지표로 활용하는 방식

□ 협의체 운영은 문현금융단지와 BIFC를 중심으로, 데이터 확보는 부산항·신항·북항, 항만배후단지, 포워딩·운송·창고·수출입 물류기업 등 실제 해운·물류 거래가 발생하는 현장 대상

□ 이후 데이터를 부산 소재 금융회사와 보증기관의 여신·보증 심사 업무에 적용하여 실증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절차를 통해 규제특례 또는 규제 해석 필요사항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추진

구분	주요내용
추진 주체	부산시와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이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부산 소재 금융회사, 보증기관, 한국해양진흥공사, 부산항만공사, 항만물류기업, 핀테크·데이터 분석기업 등이 참여
우선 과제	해운·물류 거래데이터를 활용한 여신심사 보조모형 실증
활용 데이터	선박 입출항 정보, 선적·운송계약, 운송장,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채권 회수정보, 운임지수 등
적용 방식	금융회사·보증기관의 운전자금 대출, 매출채권 금융, 공급망 금융, 보증심사 과정에서 보조지표로 활용
실증 장소	문현금융단지/BIFC를 협의체 운영 거점으로 하고, 부산항 신항·북항 및 항만배후단지의 해운·물류기업 현장에서 데이터를 확보

3. 샌드박스 제도 활용 방안

단계	신청 제도	신청 내용
1단계	규제신속확인	서비스가 신용정보업 허가, 금융회사 업무위탁, 개인정보·신용정보 규제에 저촉되는지 먼저 확인
2단계	위탁테스트 또는 지정대리인	핀테크 기업이 금융회사와 협력해 모형을 실제 여신심사 보조에 적용해보는 테스트
3단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용정보업 허가, 업무위탁, 데이터 활용 등에 특례가 필요하면 한시적 규제특례를 받아 실증

4. 기대효과

□ 부산의 물류 산업 기반을 금융혁신 과제로 전환하여 항만·물류·거래 데이터를 활용하고, 금융회사와 보증기관의 실제 심사 업무와 연결될 수 있으며, 실증 결과가 유효할 경우 부산 지역 금융 상품으로 확산

가 부산 전용 샌드박스 협의체 개설

□ 부산형 과제를 발굴·신청하고 심사·운영 단계의 비효율성 해소하기 위해 “부산 전용 샌드박스 협의체”를 개설하는 방안 고려

○ 협의체의 경우 별도 법 개정 없이 만들 수 있는 실행 수단으로 부산의 산업 기반은 있으나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서 수준으로 정리하기 어려운 문제 해결

○ 신청서 제출 전 부산시·금융위·금감원과 규제 쟁점, 소비자 보호장치, 실증 범위 등 사전협의 창구로 활용하며 기업 애로사항 수집 및 규제 쟁점과 실증 과제 전환 방안 마련 등 기업이 신청 가능한 사업 모델로 가공하는 기능 수행

○ 부산 전용 금융규제 샌드박스 협의체를 통해 지역 기업의 제도 신청을 지원하고 부산 산업구조에 부합하는 실증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기획하여 해양금융·디지털금융·탄소금융 등 지역 특화 금융수요를 실제 사업화로 연결하고 부산 금융시장 규모 확대와 부산금융중심지 기능 강화에 기여 가능

□ 샌드박스 협의체 구상

○ (개념) 부산이 독자적으로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기구가 아닌 기존의 중앙정부 샌드박스 제도를 부산의 기업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 단위 사전 지원 협의체

○ 주요기능

- 부산 특화 금융혁신 과제 발굴 : 연 1회 부산 금융혁신 샌드박스 과제 공모
- 규제 쟁점 사전 검토 : 기업이 금융위에 신청 전 협의체가 금융업 인허가 필요 여부, 자본시장법상 증권성 여부 등 검토
- 중앙정부 협의 및 제도개선 건의
- 부산블록체인특구, BIFC 등과 연계하여 부산의 공관, 기업, 이용자를 활용한 부산형 테스트베드 제공

나 샌드박스 종료 후 안착패키지 도입

□ 샌드박스의 문제 중 하나가 임시특례 이후 본 사업으로의 연결성이 약하다는 것이며 테스트 단계의 특례 이후 본사업으로의 안착까지 기업의 행정적 부담이 상당하므로 부담완화를 위한 개별 법령 개정이나 별도 인가 절차가 필요

□ 설령 부산에서 실증이 이루어져도 후속 투자, 본사 기능, 인허가 대응, 금융사 제휴, 인력 등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으면 기업은 결국 수도권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부산형 샌드박스는 단순히 “실증 기회 제공”이 아니라 실증 이후 사업화 단계까지 연결되는 구조가 필요

□ **샌드박스를 신청·실증한 기업이 실증 종료 후 바로 서울·판교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샌드박스 졸업 이후의 사업화·인가·입주·투자유치·공공조달을 하나로 묶은 후속 지원제도 마련**

○ 부산에서 실증을 완료한 기업을 대상으로 BIFC 입주, 지역 금융기관 연계, 후속 실증검증, 투자유치, 정식 인가 대응, 임대료·전문가 자문비 지원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여 샌드박스 실증이 부산 내 사업화와 기업 정착으로 이어지도록 할 필요

○ 실증성과가 확인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도입·레퍼런스 확보를 지원하여 초기 시장 형성

○ 지원 대상 기업에게는 부산 소재 법인 설립, 부산 사무소 유지, 부산 기업 대상 서비스 제공, 지역 고용 창출, 부산 금융기관과의 협업 유지 등 일정한 지역 정착 요건 부여 고려

□ **실증 종료 6개월 전부터 안착 가능성을 평가하고, 종료 3개월 전 규제개선 요청 또는 인허가 전환 절차에 착수하며, 종료 후에는 부산 금융회사·보증기관으로 확산시키는 패키지형 지원사업을 운영**

다 지역 금융중심지 전략과 연계하여 샌드박스 제도 전환

□ **샌드박스를 “기업 신청형 제도”로만 두지 않고, 지역 금융중심지 전략과 연계된 기획형 실증 플랫폼으로 전환**

○ 싱가포르와 바레인의 사례를 보면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단순한 규제 완화 장치가 아니라, 정책 목표가 명확한 분야를 선정하고 실증 결과를 제도화하는 금융산업 육성 수단으로 활용

- 싱가포르는 샌드박스를 단순 혁신 지원수단이 아닌, 국제금융·결제·자산이동·디지털금융 등 금융허브 핵심 기능을 선제적으로 실증·고도화하기 위한 정책 실행 도구로 활용
- 바레인의 샌드박스는 단순 규제유예 장치보다는 국가 차원의 핀테크·금융서비스 허브 전략과 결합하였으며 샌드박스를 통해 스타트업을 유치하고, 바레인을 GCC 금융혁신 거점으로 포지셔닝

○ 부산도 부산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부산 소재 금융공공기관, 지역금융기관, 핀테크 기업, 대학·연구기관이 공동 참여 방식으로 지역 특화 샌드박스 과제 발굴 필요

- 부산은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BNK금융그룹 등 금융 인프라와 해양금융 관련 기관이 집적되어 있으므로, 단순 핀테크 실증보다 시장 인프라형·자본시장형·해양금융형 실증에 대한 샌드박스 제도 활용

○ 규제 실증 → 시장 인프라 연계 → 제도 개선 → 지역 금융산업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설계

- 독립된 제도를 새로 만드는 방식보다, 기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연계하되 부산 특화 분야를 중심으로 과제를 기획·발굴하고, 실증 장소·참여기관·데이터·후속 사업화를 부산에서 결합하는 방식